

# 2020년도 제3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23.(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택수,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0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97건(안건번호 제2020-155713호~제2020-15701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39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30건(안건번호 제2020-3645호~3674호)
  - 회의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9개 안건(9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을 부결하고, 18개 안건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1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30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6쪽의 온라인서비스명,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제2호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회의록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없음.
- B 위원: 동의함.
- C 위원: 제2호 안건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이견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온라인서비스명,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제2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주)디스플레이', 'Activision Inc.', 'Adobe Systems Inc.', 'CJ엔터테인먼트', 'TCO(주)더콘텐츠온', '미국 CWTV', '애니플러스', '월트디즈니컴퍼니'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39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55713호~15701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예고편을 올리고, 나중에 본 영상을 올리는 블로그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과거에는 해당 블로그에 올라온 영상저작물이 심의대상이 되었음. 영상물을 올리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는 자막파일을 올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D 위원: 사이트 전체를 살펴보며 운영 목적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해당 블로거가 광고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고 있는지 의문임.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 전체글 목록을 제시하면서)해당 게시판에만 총 635개의 자막파일이 게시되어 있음.  
(하단의 광고 부분과 광고안내 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블로거는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smi 파일, srt파일로 배포되는 자막파일은 특정 불법영상을 전제로 하여 음성과 자막을 싱크하므로 침해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자막 배포의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막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고의성은 인정돼 보임.
- D 위원: 해당 한글 자막이 원본에서 제공한 번역 자막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원본을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문을 통해 출처를 밝히고 있어 다른 사람의 불법자막을 가져온 것으로 보임.

- D 위원: 아직 영상물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 한글 자막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물의 팬이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번역한 경우일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들은 '애니플러스'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에 동시에 공개되고 있는 것들임. 별도의 합법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 B 위원: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특정 블로그의 게시물을 심의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신고한 게시물 이외에도 불법복제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나머지 게시물들도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모니터링 담당팀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
- A 위원: 해당 블로그에 대해 여러번 시정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침해활동을 하는 것임.
- B 위원: 해당 게시판에 있는 600여 개의 자막파일이 모두 다 다른 저작물의 자막인 것으로 보여 해당 영상물의 팬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음.

- A 위원: 블로그 독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 화면을 제시하면서)블로그 이웃은 약 3천 2백여 명이고, 심의일 현재 방문자 수 역시 3천 명 이상임. 주말 방문자 수는 약 8천 명에 육박함.
- B 위원: 게시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 해당 블로그는 다수 작품의 자막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광고수익을 누리고 있으며 블로그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무엇보다도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동영상이나 자막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5727호~15573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

호 제2020-15573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이용자가 ‘♣♣♣♣♣♣♣♣♣’, ‘♠♠♠♠♠♠♠♠♠♠’ 등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해외 웹페이지(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구글 드라이브에 게임 파일을 업로드한자와 동일인임을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음.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고 있는 링크 각 원천게시물들은 소유자와 ‘Anyone with the link’, 즉 소유자로부터 링크를 제공받은 자가 공유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음.

해당 게임은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 중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5573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된 링크를 통해 이동한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바로 가능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면서)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D 위원: 구글 드라이브 주소는 소유자가 링크를 알려주지 않으면 검색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구글 드라이브 소유자 본인이거나 적어도 본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임을 추정할 수 있음. 사실상 본인이라고 생각됨.

- B 위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국내 서버에 원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시정권고 가능하나 해외 서버에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
- C 위원: 또한 구글 드라이브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금번 심의 안건과 같이 링크를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사용이 목적임.
- A 위원: 구글 드라이브 자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것이 아님. 본인이나 본인이 링크를 알려준 상대방만 이용이 가능한 것임. 다만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게 줄 수 있으며 금번 심의 안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여겨짐. 가결 의견임.
- B 위원, C 위원, D 위원: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57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5732호~157017호는 모

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MAGO'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55813호는 가수 여자친구의 최신곡 'MAGO'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50포인트에 판매중인 사안임. 2020. 11. 9. 발매한 앨범 '回:Walpurgis Night'의 수록곡 전부를 제공 중임(총 11곡).

(영상(방송) '김씨네 편의점 시즌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6995호는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김씨네 편의점 시즌4' 전체 에피소드(총 13부)의 영상 및 자막파일(srt 파일)을 333포인트에 판매중인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55732호~15701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5732호~15701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5713호~15701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645호~3674호 30개 안전 중 12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9개 안전(9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하고, 18건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3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3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김택수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